지금 第6條에 한해서 그 '각'자만 削除를 하고 나머지는 原案대로 通過시키는데 執行部側에서 異議가 없으십니까?

○文化觀光局長 孫長鎬 네.

○委員長 權會榮 네, 그러면 執行部側에서도 同意를 하시고, 委員님들 여기에 대해서 異議 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

네, 없으시면 그럼 第6條에서 그 '각'자만 削除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그대로 原案대로 通過하는 것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 照)

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(이하 "예술단체"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류) 예술단체에는 교향악단·합창단·소년소녀교향악단·소년소녀합창단·국악관현악단·가무단·무용단·오페라단 및 극단을 둔다.

제3조(구성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(이하 "단원"이라 한다)을 두며,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(이하 "객원출연자"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제4조(단원의 위촉)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다만,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보수등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과 객원출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 또는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의 설치) ①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중에서 교향악단·합창단·소년소녀교향악단·소년소녀합창단·국악관현악단·가무단·무용단 및 오페라단의 단원위촉 등 운영에 관한 권한을 세종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○委員長 權會榮 그러면 오늘의 議事日程을 전부 마치고 散會를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15時 02分 散會)

○出席委員

權會榮 孫馥 曺相彩
劉起鍾 孫允準 李鍾學
張精一 趙貞順 朴善童
李載震

○專門委員

鄭永國

○出席公務員

文化觀光局長 孫長鎬
世宗文化會館長 金振昱